

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4년 7월 3일

○ 회부일자 : 2024년 7월 3일

3. 제안이유

- 「국가유산기본법」 및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- 도지정자연유산 등의 조사심의를 수행하게 될 충청북도 자연유산위원회의 조직,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자연유산자료가 신설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, 제2조)
- 충청북도 자연유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(안 제5조, 제6조)
- 도지정문화유산,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및 해제 (안 제16조, 제22조, 제24조)
- 도지정자연유산의 관리 (안 제25조, 제26조)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필요성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2023.3.21.)되어 시행(2024.5.17.)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타당함.
- 그동안 「문화재보호법」, 「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에 따라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하여 멸실·훼손을 방지하는 등 자연유산을 보호하였으나, 자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제도와 규제 중심의 보호정책의 한계가 있었음.
- 정부에서 국가유산체제를 정비하여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법률인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하여 자연유산을 특성에 맞도록 보호·보존·관리·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고, 이를 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안 조문 검토

- 본 조례안은 제1조(목적)부터 제45조(청문)까지 총 5장 44개 조문과(제4장의 경우 3개 절로 구성) 부칙 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, 제5장 부칙 제44조가 누락 되어 있음.

< 조 문 체 계 >

구 분	조 문	
제1장 총칙	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	
제2장 충청북도 자연유산위원회	제5조 설치 제6조 기능 제7조 구성 제8조 위원 임기 제9조 위원장 등 제10조 전문위원 제11조 분과위원회 제12조 간사 등 제13조 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해촉·제척 등	
제3장 자연유산 보호의 정책 수립 및 기반조성	제14조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 제15조 자연유산 관련 기관·단체의 지원	
제4장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	제1절 지정 및 해제	제16조 도지정자연유산의 지정 제17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18조 지정에 관한 자료 제출 제19조 지정 고시 및 통지 제20조 지정의 교부 제21조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 제22조 지정의 해제 제23조 임시지정 제24조 자연유산자료의 지정
	제2절 관리	제25조 관리자의 선임 등 제26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27조 허가사항 제28조 허가기준 제29조 허가사항의 취소 제30조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요건 등 제31조 신고사항 제32조 행정명령 제33조 건설공사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34조 기록의 작성·보존 제35조 보조금 제36조 손실의 보상 제37조 사·군의 경비부담

구 분		조 문
		제38조 준용
	제3절 공개 및 조사	제39조 도지정자연유산의 공개 등 제40조 정기조사 제41조 직권에 의한 조사
제5장 보칙		제42조 충청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준용 제43조 권한의 위임 제44조 (조 누락 : 제44조 청문으로 해야 함) 제45조 청문
부칙		제1조 시행일 제2조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

- 제1장 총칙 관련 안 제1조 ~ 안 제4조는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자연유산법」이라 함)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, 자연유산의 보존·관리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.
- 제2장 충청북도 자연유산위원회 관련 안 제5조 ~ 안 제13조는 「자연유산법」 제41조의2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·심의 하기 위해 ‘충청북도 자연유산위원회’를 설치하고, 위원회 기능, 구성, 위원의 임기, 위원장, 전문위원, 분과위원회, 간사, 위원회 운영과 위원의 해촉·제척 규정을 마련하였음.
- 제3장 자연유산 보호의 정책 수립 및 기반조성 관련 안 제14조 ~ 안 제15조는 도지사는 「자연유산법」 제7조에 따라 연도별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, 시행계

획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, 자연유산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해 관련 단체를 지원·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
○ 제4장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는 총 3개 절로 구성되어 있음.

- 제1절 지정 및 해제 관련 안 제16조 ~ 안 제24조는 도지정자연유산, 도자연유산자료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절차,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과 적정성 검토 절차와 지정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지정 고시 및 통지, 지정서 교부, 지정의 효력 발생시기, 임시지정, 지정의 해제 절차 등을 규정하였음.
- 제2절 관리 관련 안 제25조 ~ 제38조는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존·관리를 위한 규정으로서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허가와 관련한 사항, 기준, 허가 사항의 취소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음.
- 또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,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, 관리자, 관리단체의 신고 사항과 도지사의 행정명령 사유, 건설공사 시 보존지역의 보호와 관련한 기준 및 절차, 보조금 지급, 손실의 보상, 시·군의 경비 부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음.
- 제3절 공개 및 조사 관련 안 제39조 ~ 안 제41조는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공개원칙과 공개제한 고시 및 해제, 공개제한된 자연유산의 출입허가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, 상위법에 따른 정기조사의 시기, 고려사항 및 내용 등을 규정하고

도지정자연유산등의 정기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구체화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- 제5장 보칙 관련 안 제42조 ~ 안 제45조는 자연유산의 화재예방 및 재난방지 등, 매장유산의 공고 등에 관해서는 「충청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했으며,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할 권한 사항과 허가 취소의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음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(2024.5.17.)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타당함.
- 자연유산을 특성에 맞도록 보호·보존·관리·활용할 수 있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도 차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 됨.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,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‘법령우위원칙’과 ‘법률유보원칙’을 준수하여 제정된 것으로 판단 됨.
- 조례 시행 이후 충청북도는 자연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의 수립·시행 및 각종 개발사업 계획·시행 시 자연

유산과 그 보호물·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.

- 다만, 조례 형식상의 문제로 안 제44조가 단순 누락 또는 오기로 안 제45조(청문)으로 표기되었다고 판단되므로 “제45조(청문)”을 “제44조(청문)”으로 수정해야 함.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45조(청문) 제2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그 허가를 취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44조(청문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붙임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. 끝.

[붙임 1]

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 같이 수정한다.

“제45조(청문)”을 “제44조(청문)”으로 한다.

[붙임 2]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<u>제45조</u>(청문) 제2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그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	<p><u>제44조</u>(청문) 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